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6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유경준·양금희·서정숙

조수진・추경호・박성중

이 영・이종배・황보승희

이 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0%~10 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과잉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150%로 일원화하여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제10항).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100분의 150"으로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제7조(납세의무자) ①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	
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u>6억원</u> 을 초과하	<u>9억원</u>
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	
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자(이하"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	
액]에서 <u>6억원</u> 을 공제한 금액	<u>9억원</u>
에 <u>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u>	<u>100분의 70</u>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	
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 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 지 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 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 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 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 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 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 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 1, 1, 1, 0, 1, 1, 0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
<u><삭 제></u>
<u><삭 제></u>

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